

[예비·유치원용] 아동학대,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26개월 아들을 둔 엄마 오모씨는 얼마 전 아이가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스마트폰 ‘도깨비 앱’의 도움을 톡톡히 보았다. 역지로 먹인 약을 울고 발버둥 치며 토해내 버린 아이가 ‘도깨비 앱’을 켜자마자 압전해져 순순히 약을 먹었던 것이다. ‘도깨비 앱’이란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도깨비로부터 영상전화가 걸려와 야단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나라 TV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도 등장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낮잠을 안 자려 하는 세 살 아이에게 ‘도깨비 앱’을 사용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원이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고,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겁을 주는 행위가 학대에 속하는지 부모 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아동심리 전문가들은 ‘도깨비 앱’과 같은 ‘겁주기 훈육’이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TV 뉴스와 신문을 통해 심각한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를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발간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발생 장소도 ‘가정’이 전체의 85.9%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UN의 아동권리협약 선언문 중)

전 세계 모든 아동을 방치, 착취,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UN의 아동권리협약 선언문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육을 가능한 한 최대로 확보할 의무를 지니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첫째,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인 ‘생존권’이다.
- 둘째,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인 ‘발달권’이다.
- 셋째,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보호권’이다.
- 넷째,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여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란 무엇일까?

I.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항」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항」에서는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며,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아동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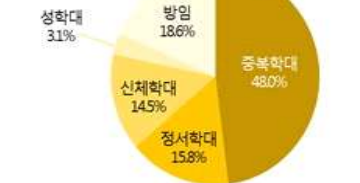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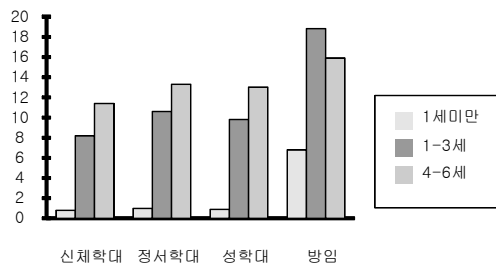
아동학대의 유형 및 유형별 처벌은 <표1>과 같다.

▶ 표1.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유형	의미	처벌
신체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례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특히 아동학대치사 시,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함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 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례법상 ·체포/감금(미수), 중체포/감금(미수), 특수 체포/감금(미수), 체포감금치상, 협박(미수),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처리 가능함
성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례법상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준강간, 미성년자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가능함

유형	의미	처벌
방임·유기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아동복지법상 특례법상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학사, 유기 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2014년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발간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만 7세 이하 아동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에서 약 25%를 차지한다. <그림1>에 따르면, 학대유형별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며 방임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는 학대의 빈도가 더 높았으며 방임은 1-3세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빈도의 학대, 방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부족하고 학대가 드러날 가능성이 적어서 통계적으로 적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 그림1. 연령별 학대유형별 빈도

▶ 그림2.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빈도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2014),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아동학대는 **아동**이 가진 여러 특성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가족, 사회 등의 **주변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인, 가족,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

▶ 표2.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및 결과

구분	요인	결과
개인	정신장애/ 과거 학대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 학대로 인한 사망 √ 아동에게 깊은 상처를 줌 √ 아동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낌 √ 아동의 신뢰가 파괴됨
가족	빈곤, 실업/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 다른 가족의 죄책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 √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 √ 가출
사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체벌의 수용/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 아동학대의 세대 간 전이 √ 학교폭력, 비행, 자살이 증가함 √ 약물 남용 및 중독 √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

아동학대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은 아래와 같다.

▶ 표3. 아동학대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원인	사례	해결방안
양육자의 문제 기본정보부족 및 교육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부족 ▷ 양육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 성인과 동일시하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추론하여 판단 ▷ 지나친 음식 제공 혹은 조용하게 하기 위해 잠만 재우거나, 장시간의 TV 시청 → 두뇌 발달 저해를 초래할 수 있음 ▷ 교육적 방임이 생길 가능성이 많음 ▷ 주변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 → 적절한 발달이 안 될 수 있음 	<p>※ 아이의 신체적 능력 및 생물학적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에 관한 사전교육 필요</p> <p>▶ 100일 전 : 24시간 항상 함께 있기 →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독립되지 않았기에 사소한 것까지 항상 보살핌이 필요함</p> <p>▶ 가급적 2세까지 : 아이의 요구에 즉각 대응 → 아이의 버릇이 나빠지거나, 가정의 훈육 스타일이라고 하여 부모가 정한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시기에는 즉각적으로 아동의 요구를 수용해 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함</p>

원인	사례	해결방안
양육자의 문제 기본정보부족 및 교육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시 단순히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아동의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지나친 벌을 세울 수 있음 ▷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늦다고 다그치거나 체벌, 정서적 학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머니의 지나친 기대심리, 사랑이라고 착각, 자신의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푸는 경우 ▷ 또래관계 문제(사회성 부족)를 아이에게 책임을 씌워 훈육한다고 학대하게 됨 ▷ 양육자의 조급함 ▷ 사랑의 매, 훈육의 범위에 대한 사고의 차이 등으로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 이전 : 3시간 이상 떨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서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 →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고 다 성장한 것은 아니며, 이 시기까지 아동은 스스로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적으로 혼자 긴 시간을 두어서는 안 됨 ▶ 2세(3세)이전 : TV를 시청하게 하지 말 것 언어적, 발달적 이득이 없음 ▶ 어머니의 욕심인지, 아동의 지적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 실시 ▶ 심리검사 등을 통해 아동의 능력파악이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 우울증 ※우울증 상태에 있는 경우 마치 늑과 같아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주변에서의 도움이 필요함 → 사전에 소통과 교류가 잘 되지 않으면 산후 우울증은 발견하기가 어려움 ▷ 시대, 혹은 남편과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안, 우울 발생 ▷ 임신 전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의 치료가 우선 ▶ 아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력 상실 ▶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해소 하거나 (신체적, 언어적 학대) 방임하게 됨 ▶ 다른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 양육자 교체 등을 고려해야 함
부모 아닌 양육자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들이 귀찮고 돌보기 싫어 방임하는 경우가 많음 ▷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문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혹은 아이의 사소한 변화에도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아동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적인 부모에서 아이 양육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아동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부모가 진단하고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들로부터 학대가 많이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시기의 아동은 일부러 양육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는 잘 없고 그저 본능적으로 행동할 뿐임. 따라서 아동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귀중이나 훈육만으로 해결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항적, 충동적, 말을 듣지 않는 아이 ▷ 밤에 잠을 못자거나 너무 예민한 아이 ▷ 기질이 너무 예민한 경우 ▷ 거짓말을 하는 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 ADHD일 경우 병원 치료가 우선 ▶ 부모가 지치고 피곤하여 방치하거나 반사적으로 때릴 수 있음 ▶ 전문가와 상의 ▶ 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이유를 밝혀야 함

▶ 표4. 아동학대의 후유증

유형	후유증
신체학대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을 야기함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임 성인기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을 높임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침
정서학대	유아기의 정서학대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게 함 가정폭력,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이 가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남 낮은 자아존중감, 의존성, 우울증, 도벽, 거짓말, 낮은 학업성취,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 행동과의 관계가 입증되고 있음
성학대	신체적 상해 이외의 자해, 우울증, 자아존중감 상실, 성충동 조절의 문제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음 아동의 나이, 지속기간, 학대수준, 고의성, 위협이나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성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됨
방임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함 영유아가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함 저학년기 학습 준비도가 떨어짐 고학년기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임

II. 바람직한 훈육방법

훈육이란 의지나 감정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인격형성의 주목적을 달성하는 교육을 뜻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발달단계별 특징을 알고 그에 맞는 훈육방법으로 아동들을 대해야 한다.

바람직한 훈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는 정중한 요청, 보상, 나-전달법 등이 있으며, 연령별 유아 발달의 특징에 맞는 훈육방법은 <표5>와 같다.

1. 정중한 요청

유아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을 경우, 정중히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유아가 정중하게 요청한대로 따르겠다고 해놓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준다.

2. 보상

보상이란 어떤 행위를 촉진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따위를 고취하기 위하여 주는 물질이나 칭찬이다. 보상의 유형에는 사회적 보상(미소, 안아주기, 칭찬하기, 쓰다듬어주기 등), 활동적 보상(친구들과 놀기, 만화 영화 보여주기 등), 물질적 보상(장난감, 아이스크림, 책 등)이 있다. 보상은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며, 물질적 보상보다는 사회적보상이 더 효과적이다.

3. 나-전달(I-Message)과 적극적 경청

정중한 요청으로 유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조용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나-전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효과적이다.

가. 문제의 소유자 가리기

- 자녀가 문제를 소유한 경우 : 자녀를 괴롭히는 문제
- 부모-자녀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 : 문제 없음
- 부모가 문제를 소유한 경우 : 부모를 괴롭히는 문제

나. 문제의 소유자에 따른 적용기술

- 자녀의 문제 → 돕기 기술 (적극적 경청)
- 부모의 문제 → 직면 기술 (나-전달법)

다. 적극적 경청

- 부모가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나서 자신이 이해한 바를 자녀에게 전달한다.
- 적극적 경청을 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해야 한다.
- 의사소통하는 시간에 자녀의 문제에 대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한다.
- 자신과 자녀의 감정이 다르더라도 자녀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있고 스스로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할 능력이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자녀를 부모와 분리된 개별적 존재로 보아야 한다.

라. 나-전달법

- 자녀가 스스로 행동 수정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아동이 '나쁘다'라는 의미의 전달을 피하게 되므로 효과적이며 개방적 의사소통이 가능해 진다.
- 효과적인 나-전달법 : 원인, 영향, 감정을 포함해야 한다.

마. 무승부법

- 부모와 자녀 간에 차이 나는 힘을 줄이고 두 사람이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
- 부모는 자녀와 함께 문제 해결에 참여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가능한 해결방안 결정

- ▶ **효과**
- 아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
 -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아동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된다.
-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줄일 수 있고, 상호당하는 일이 적어진다.

▶ 적용단계 :

갈등확인 → 가능한 해결책 탐색 → 해결책 평가 → 해결책 결정 → 수행방법 결정 → 평가

바. 부모의 발달적 요구의 고려

- **Sheehy** : 부모가 자신의 요구와 자녀의 요구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
- 부모는 자녀와 함께만이 아니라, 혼자 여행을 하고 다른 성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취미를 갖는 등의 사적인 생활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신과 부부사이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자녀의 효율성과 주도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4. 기타 : 문제행동 예방전략

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지침 제시

제시된 행동 지침이 유아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유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인지 초점 맞추기

나. 규칙 세우기 : 규칙을 세울 때 유아를 참여시키기

다. 규율 실천 :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규율을 실행하기

라. 실질적인 성취 기회 제공

수업, 유아활동 프로그램 등 유아 모두가 참여하고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제공하기

마. 지속적으로 유아 모니터링 하기

과업을 어려워하는 유아들은 도와주고 과업을 쉽게 수행하는 유아들에게는 새로운 과업 제시하기

▶ 표5. 연령별 유아 발달의 특징 및 훈육방법

연령	특징	
1-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을 혼자 신거나 벗을 수 있음 · 공을 찰 수 있음 · 주의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함 · 어른의 행동을 모방함 · 감정이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함 · 친구들과 잘 어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해야함 · 어른의 행동을 잘 모방하며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일관성 있는 반응과 인내심이 필요함
3-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능력이 향상되며 활동량이 많아짐 · 작은 물건들을 다루는 능력이 향상됨 · 현실과 상상을 혼돈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함 · 호기심이 많아짐 · 꾸중을 들으면 토라짐 · 다른 사람과 노는 것을 좋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활동적이어서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함 · 꾸중을 들으면 토라지기 시작하므로 꾸짖기 보다는 올바른 행동에 대해 모범 예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라. 방임

발견방법	· 위생상태 불량,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영양실조 ·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음 ※ 아동의 위생 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이 가능함	·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음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행동적 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비행 또는 도벽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

2.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관련벌칙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였음

관련벌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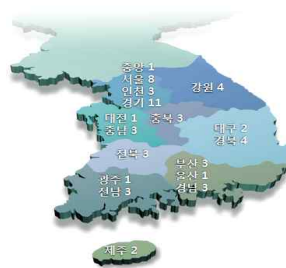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학대 전문보호기관 설치

「아동복지법 제45조」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을 함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전국 공통, 24시간 접수)



다. 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

- ① 신고 접수 : 112, 119 등
- ②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무원, 경찰 동행조사
- ③ 판단 및 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여부 판단
 담당 공무원 ⇨ 행정조치
 경찰 ⇨ 행위자 수사
- ④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및 계획 수립

411. 심리치료지원 대상: 아동, 부모 비용: 무료 412. 심리검사 종류: 간이검사, 종합심리평가 등 413. 심리치료 종류: 미술, 놀이 등 기간: 평균 2-6개월 장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치료실 등	421. 상담 및 교육 부모: 개별 집단상담, 부모교육 아동: 개별상담,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422. 사례 종결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종결 재학대발생여부, 아동 치료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결	431. 타기관 연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의료기관 법률구조공단 심리상담센터 사회복지기관 기타관련기관 등
----------------------------------------------------------------------------------------------------------------------------------------------------------------	---------------------------------------------------------------------------------------------------------------------------------------------	----------------------------------------------------------------------------------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절차

- ① 학대 의심징후(상흔, 증언 등) 발견
- ②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신병 확보
- ③ 아동학대 신고 (112)
- ④ 현장조사 및 사례개입 협조
- ⑤ 사후지원 및 서비스 협조

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의무대상기관 추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2015.10.0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의무 대상기관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추가됨

미 실시 시

「아동복지법 제7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미 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바. 아동학대 신고시 유의사항

- ① 신고처 :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② 유의사항
 - 가능한 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함
 -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함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음
 - 진술의 오염이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
- ③ 협조 및 보호
 -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 됨
- ④ 기타 : 『착한신고』 앱 소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신고의무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제작한 모바일 앱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 수록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의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 시,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IV. Q&A

Q.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가장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10개 조항을 위반한 경우 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아동이 학대로 인한 충격으로 심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방법은 없나요?

A. 피해 아동을 조사할 때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이 조사관에게 신청하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아동이 동석을 원치 않거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피해아동에게 불리할 경우 제외됩니다.

Q. 아동이 나이가 어려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대 피해 아동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는 아동·장애인 등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법을 익힌 전문 수사 경찰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Q. 옆집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서 아동학대 신고를 했지만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이 옆집 부모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아동학대 특례법상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누가 신고했는지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